

보내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낙원동, 종로세무서)
종로 세무서장
03133
*세무서상담전화:02-760-9200

대한민국의 내일,
오늘의 성실납세로 시작됩니다.



9070181903300000000031161

4260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7길 14
(이화동, 3층 1호)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한석 귀하

03100

(동)

A1 (동서울) 110 (광화문) 07 32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가 시행되어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직전연도 신고내용 란이 미리 채워집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과 결산서류 공시! 전보다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하세요!

'18.12월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 · 결산서류 공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과 결산서류 공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제출안내

간편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제출기한 : 4월 1일까지
- 홈택스 전자제출(www.hometax.go.kr) :
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자료가 있는 경우 「신고 도움자료 확인하기」 화면에서 확인가능

대상 X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 4월 1일까지
- 제출대상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인의형

● 결산서류 공시

- 총자산가액: 190,766,939
수입 + 출연재산가액: 252,614,051
283,680,037
- 제출기한 : 4월 30일까지(홈택스 - 공익법인 공시)
- 제출대상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 '19.1.1.이후 공시하는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시 회계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셔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세무서장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 등과 관련한 문의는 뒷면에 기재된 세무서 상담전화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접수증

사용자 ID	inyeeh	사용자명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접수일시	2019-03-26 15:20:34
접수결과	정상	접수번호	101-2019-2-501372093461		

• 제출내용

납세자명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납세자번호	208-82-06434
과세년월	2018-01	신고구분	정기신고
신고서종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첨부한서류	4

위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 세무서 전자신고 청구에서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납세자인 귀하에게 있으니 최종신고서 작성내용을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신고기간내에 다시 신고(신고내용의 변경 유무에 상관 없음)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출납세입 등에 대한 보고서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이사 등 선임명세서